

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신청을 위한
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7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국내 최적의 황태 생산조건을 갖춘 평창군의 지역특성에 맞게,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산업·휴양·체험 결합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,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평창군의 대표적 소득원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- 웰빙 및 슬로푸드로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식품인 황태를 평창군 명품황태 특구지정으로 지역 명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 및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며,
- 특히 우리 군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적 스포츠행사와 연계하여 평창군 황태 브랜드의 대외적 홍보는 물론 명태 본 고장으로서의 명성 회복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구의 명칭
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

나. 특구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위치(주소)	특구면적	비고
	합 계	315,743㎡	
대상지 1	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71 일원	209,703㎡	덕장 및 시설예정지
대상지 2	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54 일원	85,015㎡	덕장 및 시설예정지
대상지 3	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 29임	21,025㎡	대형광고판 설치예정지

다. 대외적 표시방법

- 한 글 :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
- 영 문 : Gangwon(Sokcho, Pyeongchang, Goseong) Pollack Industry Sprcial Zone

라. 주요사업 내용

- 특구지정을 통해 “평창 명품황태” 기반시설 조성 및 생산전문화 추진
 - 대량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: 덕장조성 및 운영 지원 및 저장시설 건립 지원
 - 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 : 황태종합타운(판매장) 조성 및 황태 테마거리 정비
 - 지역산업화 구축 : R&D 연구지원 및 가공요리 등의 식품 개발
 - 마케팅 지원 및 강화 : 브랜드 개발 및 홍보, 포장재 개발지원, 안내간판 설치

3. 참고사항

가. 주민의견 청취(공람·공고)

- 공람기간 : 2014. 8. 14. ~ 2014. 9. 2.(22일)
- 공람방법 :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군보, 읍면 게시판
- 공람장소 : 평창군청 농축산과
- 제출의견 : 없음

나. 주민공청회

- 일 시 : 2014. 9. 2.(화) 14:00 ~ 16:00
- 장 소 : 대관령 면사무소 소회의실
- 주요의견 : 대관령황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, 주민 및 소규모 영세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특구 계획의 수립
 - ☞ 답 변 : 강원도 전체의 통합 브랜드 이외에, 별도의 대관령황태 브랜드 용역이 진행 중이며, 주민 및 영세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덕장 및 기본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음.

다. 추진현황

- 명태산업 광역특구 계획수립에 용역에 따른 실무협의(1차) : 2013. 2. 14.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 : 2013. 5. 13.
 - CS NET 대표 조일수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착수 보고회 : 2013. 6. 14.
- 주민설명회 개최(1차) : 2013. 10. 24.
- 명태산업 광역특구 관련 실무협의(2차) : 2013. 12. 6.
- 중간용역 보고회(1차) : 2013. 12. 20.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연장 : 2014. 2. 4.
 - 당초(2013. 5. 13 ~ 2014. 1. 31) → 변경(~ 2014. 8. 31, 증 216일)
- 명태산업 광역특구 관련 실무협의(3차) : 2014. 2. 12.
- 명태산업 광역특구 관련 실무협의(4차) : 2014. 3. 21.
-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컨설팅 : 2014. 3. 26.
- 원주지방환경청(환경평가과) 사전입지컨설팅 : 2014. 4. 4.
- 명태산업 광역특구 관련 실무협의(5차) : 2014. 4. 11.
- 중간용역 보고회(2차) : 2014. 4. 29.
- 명태산업 광역특구 관련 실무협의(6차) : 2014. 5. 26.
- 환경부(국토환경평가과), 중소기업청(지역특구과) 업무협의 : 2014. 6. 3.
- 주민설명회 개최(2차) : 2014. 6. 13.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 : 2014. 8. 14.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 개최 : 2014. 9. 2.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군 의회 의견청취 : 2014. 10. 20.

라. 향후일정
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: 2014. 10. 31

4. 관계법령 발췌
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」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"특구"라 한다)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생략

제5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, 공청회를 열어 주민·기업·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붙 임 :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계획(안) 1부. 끝.